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1일, 한민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민수의원)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계약 발생 시 영업정지 등 제재

-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모니터링 소홀로 다수의 본인확인 위반 (타인 명의) 계약이 발생하면 영업 제재 등을 부과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포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인정됨.
 -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금융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발 건수도 2022년 53,104건→2024년 94,539건으로 급증해 범죄 악용 위험과 연루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다만, ① 시정명령 없는 영업정지 등 처분 가능 규정의 적절성 여부, ② 의무이행 부과자(전기통신사업자)와 이를 위반 시 제재 처분 대상자(기간통신사업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③ 법률 유보 원칙상 침익적 규정의 명확성 확보 필요(다수 체결된 경우의 정확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본인확인 미준수 규정(제32조의4제2항) 위반 시: 시정명령 후 이를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록 취소 가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이통사 차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불법 개통 시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임.

2)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 신고·이행 및 모니터링 등 의무

-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제 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본인 확인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①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사업자 부담, ② 모니터링 기준, 관리·감독의 핵심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의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사전승낙(안 제32조의4제8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에 동의하며, 사전승낙 규정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본인확인 미준수 계약 발생 시 보고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단일화(현행 ‘과기정통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개정안의 취지(유통점 본인확인 위반에 대한 이통사 관리·감독 강화)에는 동의하나, 사전승낙 기준(안 제32조의4제8항)에 포함될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14(사전승낙 규정)로 이관·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또한 부처 간 중복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미준수 계약 발생 시 보고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임

3) 부정 계약 사실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보 의무

○ 본인확인 미준수 계약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하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 부정계약을 적발·차단하고 제재 집행과 이용자 보호를 높일 수 있어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① 현행 조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재 가능, ② 법체계상 사실조사 관련 조항의 이관(「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사실조사 규정) 부분을 감안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방미통위의 의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필요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부정·명의로용 계약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므로 별도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 대리점·판매점이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통사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은 사전승낙(제32조의14) 철회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제한하도록 함. 이를 통해 본인확인 미준수를 예방하고 통신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함
- 다만,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 위반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판매점에 영업 제한의 위반 기준·요건을 명확히 규정(대통령 등 위임도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 문구대로라면 위반 1건만 발생해도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계약해지·사전승낙 철회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사전승낙 철회에 대한 부분도 「전기통신사업법」 상 사전승낙 규정인 제32조의14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